

『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이 폐지·삭제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변경·개정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관리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령 개정(안 제1조, 제2조제5호, 제2조제6호, 제2조제13호, 제20조)

나.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3조의2)

(현행) 2021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6년 12월 31일

다. 명칭 변경(안 제5조제5호, 안 제5장)

(현행)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→ (개정) 벤처투자조합

라. 기금관리공무원 변경(안 제27조제1호, 제2호)

(현행) 기업지원과장 → (개정) 업무담당과장

(현행) 기업지원담당 → (개정) 업무담당계장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,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(21.8.20.), 산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, 상위법의 폐지·삭제로 인한 관계 법령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·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